

[별표1] 월 이용료 <2023.01.01. 기준>

① 방문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 급	월 한도액(원)	본인부담금			
		15%기준(일반)	9%기준(감경)	6%기준(감경)	0% 기준(감경)
1등급	1,885,000	282,750	169,650	113,100	0
2등급	1,690,000	253,500	152,100	101,400	0
3등급	1,417,200	212,580	127,548	85,032	0
4등급	1,306,200	195,930	117,558	78,372	0
5등급	1,121,100	168,165	100,899	67,266	0
인지지원	624,600	93,690	56,214	37,476	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②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비용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30분	16,190	150분	46,970
60분	23,480	180분	52,880
90분	31,650	210분	58,930
120분	40,280	240분	65,000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30% 가산		

③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비용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15%	40%감경	60%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82,160	12,324.5	7,394.4	4,929.6
	가정 내 목욕	74,070	11,111	6,666.3	4,444.2
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6,250	6,937.5	4,162.5	2,775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④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9%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